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98
----------	-----

제출일자 : 2008. 6.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관련 인용 조례 21개를
일괄하여 정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안 제1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2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3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안 제4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안 제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기입 조례(안 제7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안 제8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9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자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12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제13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제14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안 제17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8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안 제19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0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1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26조, 제104조, 제139조제2항, 제140조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6, 제50조, 제51조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도로법」 제38조, 제41조,
- 「주택법」 제16조,
- 「임대주택법」 제33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자연공원법」 제9조, 제10조

- 「농지법」 제45조
- 「소비자보호법」 제6조, 제16조, 제55조

나. 입법예고 사항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입법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5조”를 “제104조”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4”를 “제16조”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3”을 “제15조”로 한다.

제2조 중 “제13조의3”을 “제15조”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7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7조의 8”을 “제24조”로 하고 “제32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8조의2”를 “제30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1조”를 “제37조”로 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를 “제36조”로 한다.

제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6조”를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내지 제51조”로 한다.

제1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로 한다.

제27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4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으로 한다.

제1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제1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0조제2항”을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31조”를 “제140조”로 한다.

제1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2”를 “제33조”로 한다.

제1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공원법」 제8조, 제14조, 제15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0조, 제41조”로 한다.

제1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다목·자목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 및 제20조”를 “제9조 및 제10조 ”로 한다.

제2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7조”를 “제45조”로 한다.

제2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 ”를 “제16조 ”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5조 ”를 “제6조 ”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제39조 ”를 “제55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p> <p>제1조(목적) —————— 제 104조 의 ——————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p> <p>제1조(목적) —————— 제104조 ——————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달성군과 달성군수의 권한에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제16조의 ——————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p> <p>제1조(목적) —————— —————제15조의 —————— —————</p>
<p>제2조(연서 주민수)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군 조례의 제정 또는 ——————</p>	<p>제2조(연서 주민수) — 제15조—————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에서 선정 추진하는 경영사업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성군 경영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	제1조(목적) ————— 제12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2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2조(권한의 위임) ————— 1. — 제24조 —— 제35조에 ————— 2. — 제30조에 ————— 4. — 제37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제1조(목적) ————— 제36조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화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p> <p>제1조(목적) ──────────────────────────────────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
<p>제4조(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수립)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p>	<p>제4조(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수립) ② ────────────────────────────────── 행정안전부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p>
<p>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동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성군을 ──────────────────────────</p>	<p>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 ─ 제10조에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 ─</p>	<p>제1조(목적) ────────────────────────────────── ─ 제5조제2항의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p> <p>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중————</p> <p>제27(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제29조제1항의—————</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내지 제51조————</p> <p>제12조(배수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p> <p>제27조(체납처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p> <p>제1항 생략</p> <p>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과태료)</p> <p>제1항 및 제2항 생략</p> <p>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 제41조</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p> <p>제139조제2항의 ━━━━━━━━</p> <p>제2조(용어의 정의)</p> <p>제1항 생략</p> <p>②━</p> <p>제38조의 ━━━━━━━━</p> <p>제3조(과태료)</p> <p>제1항 및 제2항 생략</p> <p>③━</p> <p>제140조</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1항 생략</p> <p>②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 사업을 말한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제1항 생략</p> <p>②————— 「주택법」</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p> <p>——— 제33조의</p>
<p>【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사용,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p> <p>제1조(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0조, 제41조의</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4조의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4조(허가기준)</p> <p>제1항 생략</p> <p>5.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p> <p> 다.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에 한할 것</p> <p> 자.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에 한할 것</p> <p>【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4조(허가기준)</p> <p>제1항 생략</p> <p>5.----- 다.----- ----- -----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자.----- ----- ----- ----- -----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p> <p>제1조(목적) ----- 제9조 및 제10조에 -----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조례】</p> <p>제5조(위원의 추천 및 선임) ①리장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으로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읍·면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조례】</p> <p>제5조(위원의 추천 및 선임) ①----- 제45조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농업인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피해처리센터(이하 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p>	<p>【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p> <p>----- 제16조 -----</p>
<p>제4조(처리센터의 업무) 처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한다.</p> <p>1. 소비자보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배농업인 보호시책 수립 및 실시 이하 생략</p>	<p>제4조(처리센터의 업무) -----</p> <p>1. ----- 제6조 -----</p>
<p>제9조(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 종자피해처리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1호 생략</p> <p>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보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고자 할 때</p>	<p>제9조(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 -----</p> <p>제1호 생략</p> <p>2. -----</p> <p>----- 제55조 -----</p>